

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7월 1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7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7월 14일

제6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부칙에 환경사업소 설치 기한을 한시적으로 명기(제2조)
『 구미시환경사업소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이 기간전에 민간위탁시에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. 』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시설관리공단조례, 지방공기업법 제2조
-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구미시청소년수련소('99.12.31까지),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(2001. 7.31까지)에 이어서 환경사업소를 한시기구로서 조례에 명기하여 시설물관리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.
-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간위탁시 시설물이나 수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